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대식의원 대표발의)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기술지주회사의 분할·합병, 설립기관 추가·변경 등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함(안 제36조의2제6항 신설).
-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10% 이상 보유 의무를 설립 시에만 이행하도록 자회사 의무지분을 규제를 완화함(안 제36조의4).
-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연합 또는 공동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도록 함(안 제36조의5).
-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 중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 할 것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8제1항)

II. 검토의견

안 제36조의2제6항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기관 추가·변경 등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변경인가는 설립 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동의·승인함으로써 법률상 효과를 완성하는 행정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기술지주회사의 구체적인 설립인가 요건과¹⁾ 일반적 입법례²⁾에 비추어 법문을 수정·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.

또한, 개정안은 제36조의2제6항에서 변경인가 절차를 교육부령으로 위임하고, 제36조의4제4항 단서를 삭제하여 대통령령을 정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안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

1)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2(기술지주회사의 설립·운영)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(이하 “산학협력단등”이라 한다)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.

1.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
2. 학교법인(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
3. 연구기관

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1. 주식회사일 것
2. 임원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3. 산학협력단등(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,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
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(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)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

가. 설립목적

나. 출자내역 및 비율

다. 사업계획서(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

2. 임원의 이력서 1부

2)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40조(변경인가 등) ④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시설계획,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정하고 있는데, 하위법령의 마련 및 정비에는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일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“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”로 시행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이를 주서에 반영함.

(전문위원 이 화 실)